

수원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6가합71535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김범식, 신용석

피 고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신그린아, 사해정

변론 종결 2018. 7. 20.

판결 선고 2018.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하여 설립된회사이고, 피고는 자본재 산업을 경영하는 피고 소속 조합원 상호 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품질보증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공제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 4. 14. 탈취설비 등 정화시설의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C에게 원고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기위하여 운영하는 퇴비처리공장 3개 내에 음식물퇴비화 탈취설비(악액세정탑) 3동을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탈취설비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를 공사기간 2014. 4. 14.부터 2014. 7. 13.까지, 공사대금 836,000,000(선금금 250,800,000원, 중도금 167,200,000원, 잔금 41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2조(공사금액과 공급범위 및 기간)

- 1) 계약금액 : 칠억육천만원정
- 2) 부가가치세 : 칠천육백만원정
- 3) 공급범위 : 탈취설비(악액세정탑) 제작 및 설치(보온 공사 포함)

기존 세정식 스크레바 개보수(폴링 교체 및 내부 스프레이 교체

제4조(계약보증금)

- 1) C은 원고로부터 계약에 대한 통고를 받은 후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계약

금에 상당(10%)하는 계약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되었을 경우 또는 C이 계약상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5조(선급금 이행증권)

1) C은 원고로부터 계약에 대한 통고를 받은 후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의 30%에 상당하는 선급금 이행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되었을 경우 또는 C이 계약상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선급금 이행증권은 원고에게 귀속한다.

제6조(보증범위 및 계약해지)

1) 보증내용은 배출시설의 후단(배출구)에 악취배출기준을 공기회석관능법에 따라 448배 이하로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증범위는 배출구를 기준으로 하여 448배(공기회석관능법) 이하로 한다.

3) 악취분석업체는 원고가 정한 곳으로 한다.

4) 3개월 시운전 완료 후 3개월 동안 3회에 걸쳐 악취분석을 의뢰한 분석겨로가가 배출구 기준 448배(공기회석관능법)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C은 원고가 의뢰한 악취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448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출구에서 448배 이하로 배출되도록 시설을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6) 시설을 완료 후 완벽히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공사 완료 후에도 C은 성심을 다하여 시설을 보완 및 보강하여 보증범위를 준수하도록 한다.

8) 보완 및 보강 후에도 배출구에어 448배를 초과할 시 C은 조건 없이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하며, C은 본 시설의 철거 및 계약금, 중도금 등 본 시설의 설치 및 공사에 지불된 모든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9) C은 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의 기존 시설의 철거 비용 및 그로 인하여 발생

된 모든 비용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 또는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해지)

1)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 2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최고한 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C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가) 본 시설을 설치 후 보강 및 보완에도 배출구에서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른 악취기준 448배를 초과할 시

나) 본 시설이 보강 및 보완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질 때(배출구에서 448배 초과시)

다) 본 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배출구 기준이 448배를 초과할 시

제16조(기타)

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C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에 준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분쟁의 심판은 원고의 주소지 D으로 한다.

다. C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제4, 5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금액 83,600,000원으로 된 2014. 4. 15.자 계약이행보증서, 보증금액 250,800,000원으로 된 2014. 4. 16.자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5. 4. 17.부터 2015. 5. 15.경까지 선급금 합계 250,800,000원을, 2014. 6. 30.부터 2014. 12. 11.까지 중도금 및 잔금 중 합계 509,20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대금 76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마. C은 2014. 8. 13.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탈취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마쳤으나, 위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시작한 2014. 8. 25.경부터 2015. 6. 25.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친 복합악취배출시험에서 배출구 부분의 악취가 악취배출기준 448배 이하로 내려가지 아니하는 결과가 계속 도출되었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C에게 수차례에 걸쳐 보강 및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운전에서 악취배출기준이 448배를 계속 초과하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15. 10. 7.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C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제6조, 제13조를 근거로 한 계약해제를 통보하였고, 그 무렵 위 통보가 C에게 도달하였다.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9443호로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 제16조에서 위 계약관련 분쟁은 D의 중재에 의하기로 사전 합의되어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졌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 및 선급금 지급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사고가 선급금 지급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아. 원고는 2017. 7. 28.경 C을 상대로 D에 공사대금 반환청구 중재신청(중재 E)을하였고, 중재판정부는 2018. 4. 9.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제통보송달 내지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송달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뒤 C에 대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7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중재합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보험자이고 위 중재합의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해제됨에 따라 C은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된 공사대금 7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하여 선급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을 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4, 5조에 기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이행보증금 250,800,000원 및 계약이행

보증금액 83,600,000원의 합계 334,400,000원을 지급하여 야 한다.

4.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C의 탈취설비를 이용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퇴비처리공장의 악취를 악취배출기준 448배 이하로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단순한 탈취설비의 제작 및 설치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능평가 및 보안을 위한 방법과 의무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탈취설비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까지 C이 이행하여야 할 도급채무로 포함시키는 있음에도 공사완료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하도록 C은 위 배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 ② 피고는 탈취설비의 구조상 원고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원고가 이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성능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위 탈취설비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C의 채무불이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위와 같은 원고의 의무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여러 정황상 원고와 C은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상관없이 C의 탈취설비 설치만으로도 악취배출기준을 충족할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관련 중재판정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의 반환을 C에게 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를 담은 2015.

10. 7.자 내용증명이 C에게 도달한 무렵 C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한 C의 채무불이행, 즉 보증사고 발생시 선급금 지급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제4, 5조에 기하여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C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사대금 합계 7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 합계334,400,000원(= 선급금 보증금액 250,800,000원 + 계약이행 보증금액 83,6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발급한 선급금 지급보증 및 계약보증서의 보증기간은 2014. 4. 13.부터 2014. 7. 13.까지로 되어있으므로 명시된 보증기간 내에 C이 이 사건공사계약에 따른 탈취설비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한 이상, 보증기간 이후의 시운전 기간에 비로소 확인이 가능한 설비의 성능(배출구 부분의 악취가 악취배출기준 448배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까지 피고가 보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은 성능에 대한 무한정의 보증책임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이 탈취설비의 제작 및 설치 그 자체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써 악취를 악취배출기준 448배이하로 저감시키는 것임이 분명한 이상, 위 계약의 선급금 반환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피고 또한 위 탈취설비의 성능 보장을 포함한 C의 이행 채무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보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피고가 별도의 성능보증약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는 점, ② 보증채무자에 의하여 불완전한 성능의 탈취설비가 제작 및 설치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진 원인이 제공된 시점에 이미 C의 채무불이행, 즉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내지 악취분석 결과 이후의 시점, 또는 계약해지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어, 피고주장에 의할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성능보장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음에도 성능기준의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공사가 종료되기만 하면 보증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는 C의 채무불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증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빈, 판사 강성진, 판사 박민선